



# 인공치아 원형을 반출하여 부정사용한 경우에 대한 폐기 및 손해배상청구사건

12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11년(와) 제903호
판결 일자	2001. 11. 1.	판결 결과	원고 전부패소
원고	주식회사 마즈카제(松風)		
피고	1. 야마하치(山八) 치재공업 주식회사, 2. A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영업 비밀	인공치아의 원형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 02 사건 개요

원고는 의료용구, 의약품의 제조, 수출,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의료용구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A는 원고의 구 종업원이었으나 그 후 피고회사의 종업원이 된 자이다.

원고는 피고 A가 원고의 영업비밀인 인공치아의 원형을 반출하여 피고회사에 개시(開市)하고, 피고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동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피고 상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피고 상품의 판매 정지와 석고원형 및 금형의 폐기를, 피고 A 및 피고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다.

### 03 주요 쟁점

원 고	⇔	피 고
원고의 인공치아 제작 공정은 엄중한 비밀 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본건 원형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		본건 원형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
인공치아 설계의 변경이 있었으나 이는 부분적인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아 본건 원형은 유용성을 상실하지 않았고 비밀 관리도 포기되지 않았다.		본건 원형은 인공치아 설계의 변경으로 유용성을 상실하였고 비밀관리도 포기되었다.
상기의 이유로, 본건 원형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본건 원형은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  상기의 이유로, 본건 원형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04 판결 요지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외부인과 직원에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석고 원형에 대한 보관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담당자의 임의의 보관에 맡겨지고, 두는 장소도 각 직원의 책상 위, 작업 책상이나 사물함으로 제 각각이며, 피고 A도 본건 원형을 자기 책상 위에 올려둔 채로 있던 것, 귀가시 등에는 이를 천으로 덮고 있었지만, 이것은 먼지와 햇빛을 피하기 위한 것, 석고 원형과 멜로트 원형 자체 또는 이를 수납하는 용기 등에 '외부기밀'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인공 치아 견본도 현재는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지만, 종전에는 담당자가 비닐 봉투에 넣는 등 적당히 연구실에 보관하고 있던 것, 담당자는 인공 치아의 시작품을 반출하고, 외부 전문가에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 동안 맡기고 그 배열 등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것, 그 때 비밀 유지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는 등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서는 적어도 내부 직원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비밀 관리는 되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내부인 이라도 담당 그룹의 허가 없이는 이를 자의적으로 반출 할 수" 없다는 것은 연구소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서, 특별한 관리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 05 Key Point

---

영업비밀의 요건으로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정보의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외부인과 직원에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

연구소가 그 내부인에 대하여 허가 없는 정보 반출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